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09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황명선・염태영・김기표
이해식・이개호・백선희
김현정・송재봉・이학영
임오경・박정현・손명수
김준혁・박 정・박균택
김문수・부승찬・복기왕
송옥주・최혁진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며 처우 면에서도 차별을 받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에 더 높은 보상’이라는 공정 임금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비정규직 오남용을 억제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4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현황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사업장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수당의 비율 및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②(생 략)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②(생 략)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용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사업장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수당의 비율 및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